[]적 용] 간이과세 []포 기 신고서 []재적용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	접수일			처리기간	즉시	
	상호	상호(법인명)			등록번호			
신고인	성망	성명(대표자명)				전화번호		
인적사항	사입	·업장(주된 사업장) 소재지						
O		널태				종목		
신고내용								
		「부가가치세법」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4항 또는 제116조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.						
		신규	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	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	연간공급대가 예상액			
[]간이고 적용신		사업자			71017		-1-1 , 1 H -1	
		기존	간이과세를 포기한 과세기간 개시연월일	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	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부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까지의 경과연수			
		사업자						
[]간이과세		「부가가치세법」 제70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의 포기를 신고합니다.						
			신 규 사 업 자 🗆		긴이과세를	네를	14 71 71	
포기신	!고	간이과세 기준	직전 연도 공급대가 힙	포기하려는		년 제 기 (부터)		
			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,800만원 이상 □ 과세기간			산		
[]간이고	세	「부가가치세법」 제70조제4항・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·제4항에 따라 아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재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의 재적용을 신고합니다.						
재적용선	<u>시</u> 고		세를 재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	년 제 기(부터)				
년						년 월	일 일	
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								
 첨부서류		 었음					수수료	
							없음	

작성 방법

※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[√]표시하고 해당 사항을 적은 후 작성일과 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.